

제181회 거창군의회

【 임시회 】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조례 1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5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2-05
----------	---------

제출일자 : 2012. 2. 13.

발의의원 : 강철우·강창남·이애숙

1. 개정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의거,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종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시 화장한 경우에서, 타지역에 연고를 둔 미혼자 및 군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대해서도 화장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 특히, 화장후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유도함은 물론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안 제3조)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 지원제외 대상 (안 제4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의 다른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사태(死胎) :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기준 (안 제5조)

-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후 자연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 개장 후 화장장려금은 1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8조)

-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집행부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입법예고 : 일부의견 수렴

○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군의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화장 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까지로 하며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 ③ 화장장려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④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유무선통신 및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7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화장장려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제 호 <h2 style="margin: 0;">화장장려금 지급 통지서</h2>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액				
지급일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	비고
<p>「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거 창 군 수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